



California's protection & advocacy system

새로운 자택 간병인 서비스(IHSS) 규칙: 초과근무 및 관련 변화

2018 년 2 월, 발행번호: 5586.03 - Korean

본 간행물은 미 연방 및 각 주에서 시행 중인 초과근무 관련법이 주당 40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재가 보조 서비스(IHSS) 제공자 또는 개인 선택 요양 서비스(WPCS) 제공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신설된 연방 규정 및 각 주의 법률:

- 재가 보조 서비스(IHSS) 제공자 및 개인 선택 요양 서비스(WPCS) 제공자들은 근무시간이 주중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40 시간을 초과한 경우 정규 시급액의 1.5 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 매일 있는 초과근무는 해당되지 않음
- 이제 IHSS 제공자들은 병원 예약 후 동행 또는 대체 서비스 자원 사업장(예: 성인 요양 센터 등)까지 동행과 관련된 대기 시간에 대한 수당을 특정 상황 하에서 받게 됩니다. (정책 및 절차 설명서(약칭 "MPP") § 30-757.15, 전체 카운티 대상 서신(All-County Letter) 제 17-42 호(약칭 "ACL 17-42") *IHSS 프로그램에서 병원 동행 허가에 관한 설명(Clarification on the Authorization of Medical Accompaniment in the IHSS Program)*). 이 자료는

<http://www.cdss.ca.gov/Portals/9/ACL/2017/17-42.pdf?ver=2017-06-26-111014-097>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영업일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IHSS 제공자들은 2명의 수혜자를 돌보는 데 소요된 구간 이동 시간에 대해 주중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7시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산정됩니까?

- 최초로 최대 IHSS 수요자 시간이 주별 및 월별 단위로(월 4주 사용) 산정됩니다. 수요자별 허용 시간의 총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 최대 주당 허용 시간은 $283 \div 4 = 70.75$ 시간입니다.
 - 예: 수요자는 한 달에 260시간만큼 IHS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60 \div 4 =$ 최대 65시간/주. 제공자는 주당 최대 25시간의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요자는 한 달의 일 수와 관계없이 한 달 전체에 서비스 이용 시간을 분산해야 하며 월별 허용된 이용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중 근무 시간:** IHSS “주중 근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 오전 12시에 시작하고 다음 연속 168시간 (24시간 x 7일)을 포함하여 다음 토요일 오후 11시 59분에 끝납니다.
- 초과근무 수당은 정규 시간급의 1.5배가 지불됩니다.

- 예: IHSS 급여가 시간당 10 달러인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일주일에 50 시간 일하고 그 시간 중 40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0 달러를, 10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5 달러를 받게 됩니다.

대다수의 수요자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시간 제한이 현재의 상황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근무가 초과근무로 인정됩니까?

- 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모든 IHSS 제공자의 고용주는 주가 됩니다. 제공자의 근무로 인정되는 주당 총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자가 2 명 이상의 수요자를 돌보는 경우, 모든 수요자를 대상으로 근무하는 모든 시간

예: 제공자 Peter 가 수요자 John 을 일주일에 25 시간 돌보고 수요자 Sam 을 일주일에 33 시간 돌본다고 합시다. Peter 의 주당 총 근무 시간은 58 시간이 되며, 일주일에 18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 IHSS 와 면제 가정 건강 관리 서비스(WPCS)의 결합

예: 수요자인 Sally 는 IHSS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거주지 기반(HCB) 대체 요양 프로그램(구 명칭은 요양 시설/급성 환자 병원 진료("NF/AH") 선택 요양 프로그램)을 이용 중입니다. 서비스 제공자 Danielle 은 Sally 를 위해 IHSS 주당 30 시간, WPCS 주당 30 시간을 일합니다. 그럼 주당 총 근무 시간은 60 시간이 되며, Danielle 은 일주일에 20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 IHSS 와 생계 보조 서비스(SLS) 시간:

-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는 IHSS 타임시트나 주별/월별 IHSS 최대 한도에 SLS 및 IHSS 시간을 합산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초과근무 수당 산정 시 SLS 와 IHSS 시간이 결합될지는 의문입니다.

새로운 제공자 시간 규칙은 수요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5 가지 영향

1. 초과근무 수당 산정: 월별 시간을 4 로 나누어 주당 최대 할당 시간을 산정합니다. 타임시트는 주중 근무 시간에 일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월별 총 허용 시간에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수혜자와 담당 서비스 제공자는 주당 최대 근무 시간 통지서(SOC 2271A 호 또는 2271 호 양식)를 받게 됩니다. 이들 통지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주간 업무 일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 1 명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주중 근무 시간 제한:

- 1 명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IHSS 및/또는 WPCS 업무 수행 시 주당 총 70 시간 45 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Welf & Inst. Code § 12300.4.)

예: Bernice 는 한 달에 283 시간 만큼 IHSS 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녀의 주당 할당 시간은 70.75 시간입니다. Bernice 의 모친인 Elsie 는 딸을 돌보는 유일한 서비스 제공자이며 그 밖의 IHSS 수요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lsie 는 주당 근무 시간이 40 시간을 넘어가면 주당 최대 30.75 시간 x 4 주 = 월 123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Elsie 는 Bernice 의 최대 허용 시간인 월 283 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습니다. Bernice 는 언제나처럼 한 달 전체에 Elsie 의 근무 시간을 분산해야 합니다.

Bernice 는 Elsie 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Elsie 는 한 달에 초과근무 시간이 총 123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주당 70.75 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3. 다수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자의 주중 근무 시간 제한:

- 2명 이상의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IHSS 및/또는 WPCS 업무 수행 시 주당 총 66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IHSS 면제 조항 1 항 또는 2 항 혹은 WPCS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승인된 자들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Welf. & Inst. Code §§ 12300.4(d)(3)(A)-(B) 및 14132.99(d)(1)(B)(2)).
-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은 매월 최대 360 시간의 한도 내에서 주당 66 시간의 한도를 초과해 근무할 수 있습니다. IHSS 및 WPCS 면제 조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제 5603.03 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IHSS 및 WPCS 주중 근무 시간 적용 면제 조항의 최근 변경 사항(Recent Changes to IHSS and WPCS Workweek Exemptions for Providers),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서비스 제공자는 각 수요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의 분량을 해당 수요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Welf. & Inst. Code § 12300.4(b)(4)(A)).

-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수혜자의 주당 서비스 이용 시간의 최대 한도를 준수하는 업무 일정을 제공자 측이 계획할 수 있도록 IHSS 프로그램 수혜자 및 제공자 간 주중 근무 시간 계약서(IHSS Program Recipient and Provider Workweek Agreement, SOC 2256 호 양식)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계약서는 수혜자와 담당 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서명해야 합니다.

예: 제공자 Paula 는 2 명의 수요자를 돌보며, 주당 30 시간, 주당 40 시간 각각의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aula 는 주당 70 시간을 계속 근무할 수 없으며 초과근무 규정 적용 면제 대상으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주당 66 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1 명 또는 두 사람 모두의 수요자가 Paula 가 일할 수 없는 주당 4 시간에 대해 다른 제공자를 찾아야 합니다.

4. 개인 선택 요양 서비스(WPCS): 거주지 기반(HCB) 대체 요양 프로그램(구 명칭은 요양 시설/급성 환자 병원 진료("NF/AH") 선택 요양 프로그램) 또는 재가 의료 서비스 선택 요양 프로그램(In-Home Operations Waivers)의 가입자 또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최대 66 시간의 주당 근무 시간 한도 또는 70 시간 45 분의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이들 서비스 제공자가 WPCS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WPCS 근무 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을 계산할 목적으로 IHSS 근무 시간과 합산됩니다.

- 초과근무 규정 적용 면제 대상으로 승인된 WPCS 제공자(또는 IHSS 와 WPCS 를 모두 제공하는 자)는 IHSS 근무 시간과 WPCS 근무 시간을 합산 시 1 일 총 12 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으며 매월 최대 360 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습니다. (Welf. & Inst. Code § 14132.99(d)(1)(B)(2)).

- 5. 주당 근무 시간 조정:** 수혜자는 때때로 SOC 2271A 호 양식에 명시된 수혜자의 주당 최대 서비스 이용 시간을 초과해 본인의 담당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나요?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는 관할 카운티의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도 주당 서비스 이용 시간의 최대 한도를 초과해 서비스 제공자가 근무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 시간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의 주중 근무 시간 동안 수요자에게 40 시간 이하의 이용 시간만 허용된 상황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주중 근무 시간 동안 40 시간을 초과해 근무 또는
- 서비스 제공자가 역월 기준으로 1 개월 동안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음*

그리고

- 다수의 수요자를 돌보는 서비스 제공자가 주당 66 시간을 초과해 근무*

*DRC 는 법령의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음

참고: 1 명의 수요자가 다수의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서비스 제공자들 중 1 명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요자는 결근한 제공자의 주당 근무 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제공자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평상시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자가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을 야기하더라도 할당 가능). (전체 카운티 대상 서신(All-County Letter) 제 16-01 호(약칭 “ACL 16-01”) 8 페이지 3 번째 단락. 동 자료는 <http://www.cdss.ca.gov/lettersnotices/entres/getinfo/acl/2016/16-01.pdf> 를 클릭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수혜자가 주당 근무 시간의 최대 한도를 초과해 근무할 서비스 제공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다만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한 업무가 상기의 제반 기준 중 한 가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수혜자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초과근무 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 신청은 IHSS 수혜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특정 주중 근무 시간 동안 제공자로 하여금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의 주당 근무 시간 최대 한도를 조정하도록 허락할 것을 관할 카운티 당국에 요청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러한 이의 신청의 결과로서 서비스 제공자는 역월 기준으로 1 개월 이내에 추가된 시간 동안 초과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L 16-01 호의 9 페이지 4 번째 단락을 참조할 것) 각 카운티는 이의 신청건을 승인할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상치 못한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 그러한 추가 소요 시간이 (SOC 827 호에 명시된) 예비 서비스 제공자가 도착할 때까지 지연할 수 없는 즉각적인 요구 사항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 그러한 추가 소요 시간이 IHSS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요구 사항, 그리고 수혜자의 건강 및/또는 안전에 꼭 필요한 요구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일정 변경이 발생하기 전후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복지국이 수요자 요청을 비합리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카운티는 또한 정기 의료서비스 예약과 같이 반복되는 필요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연례 재평가 시 수요자가 사회복지사에게 주당 허용 시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다른 경우에도 주당 허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수요자 Rita 는 독감에 걸려서 그 달 제 2 주에 제공자의 추가 근무가 필요합니다. 담당 제공자는 보통 일주일에 38 시간 근무하지만 그 주 Rita 가 아파서 44 시간 일합니다. Rita 는 카운티에 전화해(제공자 근무 중 또는 근무 후 바로) 초과근무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ita 는 그녀의 서비스 제공자가 그 달에 허용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도록 동 제공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 수요자 Andrew 는 월 138.5 시간 또는 주 34.6 시간 IHSS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ndrew 는 제공자가 그 달의 제 1 주에 38 시간, 그 다음 주에는 26 시간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변경으로 인해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Andrew 는 개인 일정상 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 같은 수요자 Andrew 는 월 138.5 시간 또는 주당 34.6 시간 IHSS 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제공자가 제 1 주에 42 시간, 제 2 주에 22 시간 일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요청으로 제공자는 제 1 주에 2 시간의 초과근무를 해야 하게 되므로 Andrew 는 카운티에 이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예: 수요자 Carla 는 월 186 시간 또는 주당 46.5 시간 IHSS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arla 의 제공자는 보통 월 26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Carla 는 초과근무 시간이 결과적으로 월 26 시간을 넘지 않는 이상,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주에는 46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거나 다른 주에는 그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본인의 주당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상기의 예에서 제공자가 다른 수요자를 돌보는 경우 수요자들은 제공자의 주당 총 66 시간(또는 면제 조항 적용 시 주당 총 90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가 서비스 이용 자격 상실을 야기할 경우, 지역 센터 고객들은 어떻게 되나요?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이 생계 보조 서비스(약칭 “SLS”) 또는 동 서비스의 제공자를 이용할 자격을 상실함을 의미할 경우, 지역 센터의 수요자들은 개별 프로그램 플랜(약칭 “IPP”) 회의에 참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에 따라 지역 센터로부터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한 개별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 DRC 의 입장입니다.

- 수요자는 서비스 이용 자격 상실 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수요자는 24 시간 내내 요구 사항이 있으며 혹은 담당 서비스 직원의 전환은 많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를 갖고 있음.
- 수요자가 SLS 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 센터에 추가 개인 간호자, 위탁 간호 또는 기타 서비스를 요청하여 초과근무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자격 상실을 만회할 수 있음(예: 초과근무 규정 적용 면제 요건이 수요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일 경우).

IHSS 및 WPCS 면제 조항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자들은 주당 최대 90 시간, 매월 최대 360 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 조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간행물 제 5603.01 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재가 보조 서비스(IHSS) 및 개인 선택 요양 서비스(WPCS) 주중 근무 시간 적용 면제 조항의 최근 변경 사항*([Recent Changes to In-Home Supportive Services \(IHSS\) and Waiver Personal Care Services \(WPCS\) Workweek Exemptions for Providers](#))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HSS 근무시간 규정 면제 조항 제 1 조(이전 명칭은 가족 면제 조항):

면제 조항 제 1 조는 2016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적용됩니다.

- 2명 이상의 IHSS 수혜자들에게 IHSS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제공의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IHSS 수혜자들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 서비스 제공의 대상에 해당하는 IHSS 수혜자와의 관계가 부모, 계부모, 양부모 또는 조부모 등 친족 관계에 해당되거나 법적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인 경우 (Welf. & Inst. Code § 12300.4(d)(3)(A)(i)-(iii)).

IHSS 근무시간 규정 면제 조항 제 2 조(이전 명칭은 특별 상황에 대한 면제

조항): 2명 이상의 IHSS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각 수혜자가 동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을 때 집이 아닌 외부 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위험이 높은 다음의 제반 상황 중 적어도 한 가지 상황에 처할 경우, 면제 조항 제 2 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요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제공자가 반드시 충족해야 할 복잡한 의학적 및/또는 행동적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자의 수가 한정된 농촌 또는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이유로 수요자가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 수혜자가 자신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돌봄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할 수 없는 경우. (Welf. & Inst. Code § 12300.4(d)(3)(B)(i)-(iii)).

개인 선택 요양 서비스(WPCS) 면제 조항: 2016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거주지 기반 서비스(HCBS) 선택 요양 프로그램(구 명칭은 요양 시설/급성 환자 병원 진료("NF/AH") 선택 요양 프로그램) 또는 재가 의료 서비스 선택 요양 프로그램(In-Home Operations Waivers)에 등록되었고 요청 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학적 또는 행동적 요구가 있으며 그러한 선택 요양 프로그램에 가입했거나 동 프로그램을 신청한 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은 다음에 열거한 제반 상황이 존재할 경우, WPCS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자가 선택 요양 프로그램 신청자 또는 가입자와 동일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심지어는 제공자가 동 신청자 또는 가입자의 가족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또는
- 서비스 제공자가 현재 선택 요양 프로그램 가입자를 돌보고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동 가입자를 돌본 경우, 또는
- 선택 요양 프로그램 신청자 또는 가입자가 자신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돌봄 서비스 제공자를 찾을 수 없는 이유로 돌봄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시할 수 없는 경우. (Welf. & Inst. Code § 14132.99(d)(1)(A)).

초과근무 규정 적용 면제 대상으로 승인된 IHSS 제공자 또는 WPCS 제공자(또는 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자)는 IHSS 근무 시간과 WPCS 근무 시간을 합산 시 각 서비스 가입자에게 허용된 월 서비스 이용 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 일 총 12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매월 최대 360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담당 서비스 제공자가 이 신설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습니까?

- 면제 조항 제 2 조의 의뢰 및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주중 근무 시간 한도를 초과한 근무 시간을 보고하는 내용의 타임시트를 제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범한 규정 위반은 해당 제공자가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승인되었거나 혹은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로 간주(즉, 취소)됩니다. (전체 카운티 대상 서신(All-County Letter) 제 17-13 호(약칭 “ACL 17-13”). <http://www.cdss.ca.gov/Portals/9/ACL/2017/17-13.pdf?ver=2017-04-07-144620-147> 의 9 페이지 첫 번째 단락을 참조할 것.)
- 위반 건들은 다음의 4 단계 절차를 통해 평가됩니다.
 - **위반 1 단계:** 수요자와 제공자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됩니다.
 - **위반 2 단계:** 수요자와 제공자는 2 차 서면 경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제공자는 교육 자료를 제공받을 것이며 해당 자료를 읽고 이해했음을 알리는 통지서에 서명함으로써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위반 3 단계:** 제공자에 대한 3 개월 자격 정지

- **위반 4 단계:** 제공자에 대한 1 년 자격 정지
- **종료:** 제공자가 여러 번 제한 규칙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주 사회복지부 또는 카운티는 IHSS 프로그램에 따른 제공자의 서비스 제공을 종료 처리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칙에 대해 그 외 알아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 **이동 시간:** 근로자는 같은 날 수요자 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주당 7 시간을 초과한 이동 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동 시간은 수요자의 서비스 시간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동 시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제 5607.03 호 IHSS 서비스 제공자 대기 시간 및 이동 시간(IHSS Provider Wait and Travel Times)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 시간:** 근로자는 근무 중인 경우 의료 진찰 시 수요자와 함께 대기하는 시간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라도 수요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공자가 도울 것이므로 근로자는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기 시간 지불을 위해 평가에 시간이 추가되지만 최대 283 시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동 시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제 5607.03 호 IHSS 서비스 제공자 대기 시간 및 이동 시간(IHSS Provider Wait and Travel Times)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

- 귀하에게 도움이 될만한 전체 카운티 대상 서신(All-County Letters, 약칭 ALC)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CL 16-01 호 서신은 초과근무 수행, 대기 시간, 이동 시간 보수를 포함한 신설 규정 및 양식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http://www.cdss.ca.gov/lettersnotices/entres/getinfo/aci/2016/16-01.pdf> 를 참조할 것).

- ACL 17-42 호 서신은 병원 예약 후 동행 시 대기 시간 허용과 관련된 제반 방침 및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http://www.cdss.ca.gov/Portals/9/ACL/2017/17-42.pdf?ver=2017-06-26-111014-097> 을 참조할 것).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간행물에 대한 다음의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저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설문 조사지 작성\]](#)

법률 상담은 전화 800-776-5746 으로 문의하거나 [상담 요청서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916-504-5800(북부 캘리포니아), 213-213-8000(남부 캘리포니아)으로 전화하십시오.

Disability Rights California(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재정 지원자들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html> 를 방문하십시오.